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동화성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남부천세무서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2명(4급 2명, 5급 8명, 7급 4명, 8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9명(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0명(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R&D 세액공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5명, 7급 4명, 8급 4명), 포렌식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5명, 7급 3명), 납세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9급 6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2.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이 상향되었던 지방세무관서 인력 4명(5급 4명)을 종전의 직급(6급 4명)으로 환원하되, 국세청 인력 4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청렴문화 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청 감사관 보임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5. ~ 2.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인세과·원천세과”를 “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로,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제21조제1항 단서 중 “서울청 및 중부청”을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으로,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감사관은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4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100명(6급 42명)”을 “102명(6급 44명)”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2 중 중부지방국세청란 및 인천지방국세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중부지방 국세청	경기도	안 양 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군포시
		동안양 세무서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 의왕시
		안 산 세무서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수 원 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권선동, 곡반정동은 제외한다), 팔달구
		동수원 세무서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중 권선동, 곡반정동
		동화성 세무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중 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 경기도 오산시
	화 성	화성시 세무서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정남면·진안동·능동·기산동·반정동·병점동·반월동·배양동·기안동·황계동·송산동·안녕동·반송동·석우동·청계동·영천동·중동·오산동·방교동·금곡동·송동·산척동·목동·신동·장지동은 제외한다)

	평택세무서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안성시
	성남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정구
	분당세무서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천세무서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광주세무서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세무서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은 제외한다), 가평군
	구리세무서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중 별내면·별내동·퇴계원읍·일패동·이패동·삼패동·다산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와부읍·조안면
	시흥세무서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용인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수지구
	기흥세무서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원도	춘천세무서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세무서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원주세무서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중 봉평면·대화면·방림면
	영월세무서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임계면은 제외한다), 평창군(대관령면·진부면·봉평면·대화면

			· 방림면 · 용평면은 제외한다)
	삼척 세무서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강릉 세무서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 · 진부면 · 용평면, 정선군 중 임계면
	속초 세무서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광역시	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북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남인천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세무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김포세무서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천세무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계수동·괴안동·범박동·소사동·소사본동·송내동·심곡본동·역곡동·옥길동·원미동·춘의동·심곡동은 제외한다)
		남부천세무서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중 계수동·괴안동·범박동·소사동·소사본동·송내동·심곡본동·역곡동·옥길동·원미동·춘의동·심곡동
		의정부세무서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세무서	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동고양 세무서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파 주 세무서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광 명 세무서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별표 5의 6의 세무서란 “부천세무서, 북부산세무서”를 “북부산세무서”로 하고, 같은 표 7의 세무서란 중 “동수원세무서, 평택세무서”를 “평택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8의 세무서란 중 “성남세무서”를 “동화성세무서, 성남세무서”로, 같은 란 중 “의정부세무서”를 “부천세무서, 남부천세무서, 의정부세무서”로 하며, 같은 표 10의 세무서란 중 “남대문세무서”를 “남대문세무서, 동수원세무서”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90”을 “894”로 하고, 일반직계 “886”을 “890”으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을 “29”로, 행정사무관 “117”을 “119”로, 세무주사 “236”을 “237”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11”을 “918”로 하고, 일반직계 “907”을 “914”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2”를 “33”으로, 행정사무관 “116”을 “122”로, 세무주사 “241”을 “238”로, 전산주사 “43”을 “45”로, 전산주사보 “64”를 “6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9,801”을 “19,98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751”을 “19,932”로 하며, 일반직 계 “19,751”을 “19,932”로 하고, 서기관 “175”를 “18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8”

을 “64”로, 행정사무관 “991”을 “1,014”로, 세무주사 “4,200”을 “4,235”로, 세무주사보 “4,381”을 “4,429”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을 “14”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세무서기 “5,209”를 “5,246”으로, 세무서기보 “3,492”를 “3,525”로, 방호서기보 “148”을 “150”으로, 운전서기보 “157”을 “158”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9,901”을 “20,084”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851”을 “20,034”로 하며, 일반직 계 “19,851”을 “20,034”로 하고, 서기관 “174”를 “18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1”을 “67”로, 행정사무관 “1,033”을 “1,052”로, 세무주사 “4,232”를 “4,273”으로, 세무주사보 “4,382”를 “4,430”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을 “14”로 하며,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세무서기 “5,231”을 “5,268”로, 세무서기보 “3,492”를 “3,525”로, 방호서기보 “148”을 “150”으로, 운전서기보 “157”을 “158”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중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05명(행정사무관 35명)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별표10의2의 정원 101명(행정사무관 31명”으로,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35명”을 “각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

의2의 세무주사 31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법인세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 2명 및 전산주사보 1명과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2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3]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9,960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910
일반직 계	19,910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5
서기관	17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4
행정사무관	1,006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235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425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7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242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2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0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524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7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48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20
운전서기보	157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
열관리운영서기보	16
사무운영서기보	467
기록연구사	7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0.0
일반직 계	50.0
세무주사	3.0
세무주사보	7.0
세무서기	14.0
세무서기보	26.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4]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및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20,062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012
일반직 계	20,012
고위공무원단	2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6
서기관	17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67
행정사무관	1,044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3
세무주사	4,273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75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9

세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방호주사	2
전산주사	10
세무주사보	4,426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4
세무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3
세무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방호주사보	3
공업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전산주사보	17
운전주사보	1
세무서기	5,264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22
세무서기 또는 공업서기	5
방호서기	4
전산서기	70
공업서기	1
운전서기	1
세무서기보	3,524

세무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7
시설서기보	1
방호서기보	148
공업서기보	6
전산서기보	20
운전서기보	157
전화상담운영서기보	35
열관리운영서기보	16
사무운영서기보	467
기록연구사	7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50.0
일반직 계	50.0
세무주사	3.0
세무주사보	7.0
세무서기	14.0
세무서기보	26.0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1. 국세청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	6명 (4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빅데이터센터	13명 (4급 1명, 5급 5명, 7급 7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종교인 소득세 과세	2명 (5급 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장려세제 운영	1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5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주택임대소득 관리	1명 (6급 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국세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종교인 소득세 과세(지방국세청)	105명 (6급 6명, 7급 27명, 8급 38명, 9급 3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지방국세청)	96명 (6급 20명, 7급 21명, 8급 29명, 9급 2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탈세제보·차명계좌 처리(세무서)	73명 (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근로장려세제 집행(지방국세청)	363명 (6급 66명, 7급 97명, 8급 108명, 9급 9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세무서)	68명 (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변칙 상속·증여 차단(세무서)	51명 (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악의적 채납자 강력대응 (지방국세청)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8)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세무서)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법인납세국) ① (생략)	제8조(법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법인납세국에 법인세과·원천세과 및 소비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법인세과·공익중소법인지원팀·원천세과----- 서기관으로,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및 사후관리 업무의 기획
	2.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회신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감사관) ①감사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감사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1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략)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제21조(감사관) ① -----

--. ---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 서기관-----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별표 6의2의 정원 중 24명(행정사무관 3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세무주사보 6명, 세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전산주사보 1명, 학예연구사 1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2와 같으며, 별표 10의2의 정원 중 100명(6급 42명, 7급 1명, 8급 57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략)

제35조(한시정원)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방식 변경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1년 2월 28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세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02
명(6급 44명)-----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한시정원) -----

----- 2023년 2월
28일-----

---.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0의2 의 정원 105명(행정사무관 35 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 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5 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 별표 10의2의 정원 101명(행정사무관 31명, ----- ----- ----- 각 각 별표 6의2의 세무주사 4명,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1명,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90	894	+4
·	·	·	
·	·	·	
일반직 계	886	890	+4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8	29	+1
·	·	·	
행정사무관	117	119	+2
·	·	·	
·	·	·	
세무주사	236	237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11</u>	<u>918</u>	+7
.	.	.	
.	.	.	
일반직계	<u>907</u>	<u>914</u>	+7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2</u>	<u>33</u>	+1
.	.	.	
행정사무관	<u>116</u>	<u>122</u>	+6
.	.	.	
.	.	.	
세무주사	<u>241</u>	<u>238</u>	-3
.	.	.	
.	.	.	
전산주사	<u>43</u>	<u>45</u>	+2
.	.	.	
.	.	.	
전산주사보	<u>64</u>	<u>65</u>	+1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801</u>	<u>19,982</u>	+181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9,751</u>	<u>19,932</u>	+181
일반직 계	<u>19,751</u>	<u>19,932</u>	+181
.	.	.	
.	.	.	
서기관	<u>175</u>	<u>181</u>	+6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68</u>	<u>64</u>	-4
행정사무관	<u>991</u>	<u>1,014</u>	+23
.	.	.	
.	.	.	
세무주사	<u>4,200</u>	<u>4,235</u>	+35
.	.	.	
.	.	.	
세무주사보	<u>4,381</u>	<u>4,429</u>	+48
.	.	.	
.	.	.	

세무서기	<u>5,209</u>	<u>5,246</u>	+37
.	.	.	
.	.	.	
세무서기보	<u>3,492</u>	<u>3,525</u>	+33
.	.	.	
.	.	.	
방호서기보	<u>148</u>	<u>150</u>	+2
.	.	.	
.	.	.	
운전서기보	<u>157</u>	<u>158</u>	+1
.	.	.	
.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9,901</u>	<u>20,084</u>	+183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제외한다)	<u>19,851</u>	<u>20,034</u>	+183
일반직 계	<u>19,851</u>	<u>20,034</u>	+183
.	.	.	
.	.	.	
서기관	<u>174</u>	<u>180</u>	+6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71</u>	<u>67</u>	-4
행정사무관	<u>1,033</u>	<u>1,052</u>	+19
.	.	.	
.	.	.	
세무주사	<u>4,232</u>	<u>4,273</u>	+41
.	.	.	
.	.	.	
세무주사보	<u>4,382</u>	<u>4,430</u>	+48
.	.	.	
.	.	.	

세무서기	<u>5,231</u>	<u>5,268</u>	+37
.	.	.	
.	.	.	
세무서기보	<u>3,492</u>	<u>3,525</u>	+33
.	.	.	
.	.	.	
방호서기보	<u>148</u>	<u>150</u>	+2
.	.	.	
.	.	.	
운전서기보	<u>157</u>	<u>158</u>	+1
.	.	.	
.	.	.	